

○ 제 목: 제56차 이사회
○ 일 시: 2019.09.23(월) 18:30
○ 장 소: 용지봉

회 의 록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제56차 이사회 회의록

■ 회의소집 통지일 : 2019. 09. 10(화)

■ 일 시 : 2019. 09. 23(월) 18:30~20:30

■ 장 소 :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 9(용지봉)

■ 재직이사 총 7명 중 6명 참석, 감사 2명 참석

의사인원 : 김○근, 김○진, 김○수, 박○영, 서○지, 김○덕
감사인원 : 강○표, 유○철

- 배석인원 : 박○순, 서○지, 김○동, 김○호

■ 안 건

- 제1호 안건 :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안)
- 제2호 안건 :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 제3호 안건 : 차량 폐기처분의 건
- 보고사항

■ 회의내용

1. 성원보고

김○동 국장이 재직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다

2. 개회

김○근 대표이사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18:30시 수경복지재단 제56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3. 대표이사 인사

김○근 대표이사가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다. 한여름의 무더위가 지난 후 찾아온 가을태풍으로 혼란한 중에도 이사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더욱 기쁘다고 하시며, 이번 이사회에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및 운영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며 인사에 갈음하다.

4. 전자회의록 처리

- 김○근 대표이사가 전자회의록 처리를 상정하고, 김○동 국장에게 전자회의록을 보고하게 하다.

- 김○동 국장이 제55차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하다.
- 김○진 이사가 전자회의록 검토 후 이의 없음을 말하고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박○영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전자회의록 처리에 관해 이의 없는지를 물고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 처리하다.

5. 부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예산(안)

- 김○근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김○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 김○동 국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 2019년 변경사업계획 및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다.

1) 수경복지재단	기정예산	48,323천원	추경예산	49,463천원
2) 비슬노인복지센터	기정예산	268,597천원	추경예산	280,958천원
3) 단비노인복지센터	기정예산	271,584천원	추경예산	283,626천원
4) 비슬원	기정예산	791,816천원	추경예산	807,764천원
5) 수경기억학교	기정예산	413,922천원	추경예산	424,697천원
6) 수경주간보호센터	기정예산	733,155천원	추경예산	710,060천원

- 김○근 대표이사가 비슬노인복지센터와 단비노인복지센터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예산 1.5개월 추가 지원분이 추경에 반영되었고, 비슬원과 수경기억학교 등은 어르신들을 위한 공기정화기 설치예산 추가지원분을 반영하였음을 설명하다.
- 민○기 이사가 비슬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의 변동이 없음에도 요양급여수입 증액분이 많은데 입소인원에 변동이 있었는지 묻다.
- 박○순 원장이 입소인원의 변동은 없지만, 당초 예상보다 가산금 수입이 증가하여 요양 급여수입이 증가하였음을 설명 드린다.
- 김○진 이사가 수경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세입과 세출영역에서 다른 시설에 비해 변동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다.
- 서○지 소장이 이용 어르신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여 발생한 요양급여수입 감소분과 기 정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자리 안정자금' 및 올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가산금 수입' 을 세입예산에 추가편성 하였고, 세출영역에서는 세입영역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부채상 환금을 추가편성 하였음을 설명 드린다.
- 박○영 이사가 회의 자료와 시설장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세입예산의 변동과 운영상황 의 변화에 대응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김○수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으면 ‘예’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예”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제2호 의안 :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

- 김○근 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인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김○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 김○동 국장이 회의 자료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겸직 시설장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및 근로기준법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한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규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다.
- 박○경 이사가 운영규정에 대표이사 겸직 시설장에 관한 규정은 없었는지 묻다.
- 김○동 국장이 기존 운영규정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정의와 연차휴가 및 퇴직금 관련규정만 명시되어 있어, 대표이사 겸직 시설장의 신분을 운영규정 상에 명시하여 규정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방지하고자 운영규정 개정(안)에 포함하였음을 설명 드리다.
- 김○근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관련 조항이 추가된 부분을 운영규정에 반영하였으며, 기존 운영규정에서는 시설장 및 직원의 결격사유를 항목별로 열거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관련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시하여 단순화하였음을 추가로 설명하다.
- 김○덕 이사가 개정(안)의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개정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존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명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김○진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으면 ‘예’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이사 전원이 “예”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제3호 의안 : 차량 폐기처분의 건

- 김○근 대표이사가 제3호 의안인 ‘차량 폐기처분의 건’을 상정하고 김○동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 김○동 국장이 수경주간보호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경형승용차(마티즈)의 차령이 오래되고 노후화하여 수리를 통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기처분하고자 한다고 설명 드리다.
- 김○수 이사가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을 폐기처분할 경우 어르신의 송영 등 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묻다.

- 서○지 소장이 경형승용차(마티즈)의 운행이 어려워 올해 5월부터 같은 경형승용차량인 레이를 렌트하여 운행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송영 등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최초등록일이 2007년 3월 7일로 차량 최초등록 후 12년 6개월이 경과하여 조달청고시 내용연수표의 승용자동차 내용연수 9년도 경과하였음을 설명 드리다.
- 박○영 이사가 차량의 노후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정부의 승용자동차 내용연수를 충족하고, 어르신의 송영 등 시설 내 차량운행에도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므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 민○기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 없으면 '예'로 표해 주시기를 말하자 참석여성 전원이 "예"로 찬성을 표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가결처리하다.

□ 보고사항

- 김○근 대표이사가 수행인력이 3명인 기존의 재가노인지원센터 48개소를 수행인력 5명의 재가노인지원센터 34개소로 전면 개편하여 시행할 예정인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센터 구축계획과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다.
- 김○덕 이사가 대구형 노인지원센터로 개편할 경우 비슬노인복지센터와 단비노인복지센터의 운영에는 변동이 없는지 묻다.
- 김○근 이사장이 현행 48개소를 34개소로 개편하면서 1개 법인에 재가노인지원센터 1개 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재 2개인 노인복지센터를 1개로 통합하여야 하지만 수행인력이 5명으로 증원되고, 대구시에서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서비스 관리자 등의 추가인력 소요가 발생하여 직원들의 고용승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설명하다.

□ 기타 안건

- 김○근 대표이사가 기타 안건이 없는가를 묻고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다.

6. 폐회

- 민○기 이사가 폐회하기를 동의하고, 김 진 이사가 재청하다.
- 김○근 대표이사가 폐회에 이의 없음을 묻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20:30에 폐회를 선언하다.

이상과 같이 제56차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사회복지법인 수경복지재단

대표이사 김○근



이사 김○진



이사 김○덕



이사 김○수



이사 민○기



이사 박○영

